

문서번호	건설관리과-1545
결재일자	2016. 1. 29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★주무관	건설행정팀장	건설관리과장	안전건설교통국장
박상두	박천옥	구자호	전결 01/29 김해성
협 조			

《사실안내표지판》
2016년도 종합 관리 계획(안)



안 전 건 설 교 통 국
(건 설 관 리 과)

-걷고 싶은 거리 광진을 위한-

2016년도 사설안내표지판 관리 계획

규격 외 표지판을 표준 매뉴얼로 변경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의 정비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'걷고싶은 거리' 광진을 조성하고자 함.

1 추진 근거

- 도로법 제61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54조
-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(국토교통부 예규 제107호)
- 서울시 사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 매뉴얼 ver.2
- 서울시 2015년 사설안내표지판 정비계획(보도환경개선과)

2 추진 목표

- 도로의 공공기능 회복과 보도의 정상화
-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
- 디자인 표준화를 통한 통일된 정보전달 실현

3 추진 방향

- 사설안내표지의 전수조사를 통한 허가·무허가 구분관리
- 정기 및 수시 도로사용료 부과·징수
- 적극적 행정조치를 통한 무허가 표지판 정비
- 서울시 표준 디자인 매뉴얼 ver.2 로 설치 유도

4

사설안내표지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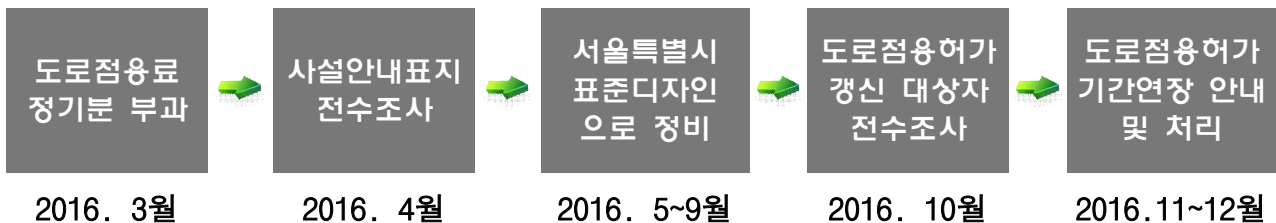
(단위:개소)

구 분	합계	허 가		무허가
		ver.1(2개국어)	ver.2(4개국어)	
계	381	216	46	119
공공기관	184	105	20	59
학 교	56	45	5	6
종교시설	81	48	13	20
기 타	60	18	8	34

5

추진 개요

- 기 간 : 2016. 1월 ~ 12월
- 대 상 : 관내 설치된 허가 및 미허가 사설안내표지판
- 내 용 :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및 표준화
- 추진일정



6

세부추진계획

■ 도로점용료 정기본 부과

- 기간 : 2016. 3월
- 도로점용료 정기본 부과 : 94건(점용료 면제대상 168개 제외)
 - 시일반 도로사용료 : 75건
 - 구일반 도로사용료 : 19건

■ 사설안내표지 전수조사

- 기간 : 2016. 4월
- 조사인원 및 방법
 - 조사자(담당주사, 직원 2명) 전지역 출장 조사
- 주요내용 : 무허가 · 허가 · 노후 · 훼손 된 표지판 현황조사

■ 무허가 및 기존(ver.1) 표지판 정비

- 기간 : 2016. 5월 ~ 9월
- 대상 : 무허가 사설안내 표지판 및 ver.1(2개국어) 표지판
- 정비방법

【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】

설치기관	정비방법
정규 설치 가능 사설안내표지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진 정비 및 점용허가 신청 절차 안내문 발송 - ver.2로 설치 및 점용허가 신청 유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변상금 부과 및 고발조치 병행 (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) - 미정비시 안내표지판 철거명령, 미이행시 행정대집행(도로법 제7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)
정규 설치 불가능 사설안내표지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진 정비 공문 발송 - 변상금 부과 및 고발조치 이행 철저 (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) - 미정비시 안내표지판 철거명령, 미이행시 행정대집행 (도로법 제7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)

【ver.1로 설치한 시설안내표지판】

설치기관	정비방법
시·자치구	- ver.2로 재설치
국가 등 공공기관	- ver.2로 재설치 유도 · 대상기관에 재설치 안내문 발송 및 유도
민간(기관)	- ver.1로 점용허가 갱신 허용 · 설치자부담 재설치할 경우 민원발생 예상됨에 따라 기존 안내표지 허용 - 노후, 훼손 등으로 부득이 재설치할 경우 ver.2 설치 유도

■ 도로점용허가 갱신

○ 전수조사

- 기 간 : 2016. 10월
- 조사자 : 담당자 2명
- 대 상 : 2016년 기간만료 허가자
- 조사구간 : 광진구 전지역

○ 허가 기간연장 안내 및 갱신 처리

- 기 간 : 2016. 11월 ~ 12월
- 대 상 : 2017년 갱신 처리 대상자
- 내 용 : 2017년 허가 갱신 처리

< 갱신처리 세부일정 >

일 정 별	기 간	비 고
안내문 발송	'16. 11. 1. ~ '16. 11. 15.	갱신대상은 기존 자주형 표지를 서울시 표준디자인으로 교체장비
신청서 접수 및 갱신처리 허가	'16. 11. 16 ~ '16. 12. 31.	방문·우편접수

7

문제점 및 대책

■ 불법 사실안내표지판

- 사실안내표지 소유자의 입장 주장으로 철거에 비 협조적임
☞ 철거명령 미이행 시 적극적인 행정조치(과태료, 변상금 등)

■ ver.1로 설치한 사실안내표지판

- 기존설치 표지판의 철거 및 재설치 비용 등으로 인해 표준 매뉴얼 미적용 고수(제작·설치비 : 40 ~ 42만원)
☞ 한·영표기로 기 정비한 민간 표지판은 정비대상에서 제외

8

기 대 효 과

■ 표지판 정비로 인한 걷기편한 가로환경에 기여

- 노후·훼손 및 무단으로 설치된 표지판을 정비하여 『인도10계명』 걷고 싶은 거리 광진 조성에 기여

■ 통일된 정보전달로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

- 다국어 표기를 추가하여 시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방문객의 편의 및 접근성 제고

9

행 정 사 항

■ 철거명령 미 이행시 변상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

- 미 정비시 안내표지판 철거명령, 미 이행시 행정대집행 (도로법 제7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)

■ 각 부서의 적극적인 예산반영으로 정비협조

- 광진구의의회, 총무과, 문화체육과, 청소과, 시설관리공단 등